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3호 2024. 6. 21(금)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남원시 규 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1
- 남원시 규 칙 제746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0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62호 남원시립예술단 운영 규정-----5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20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문화저장소)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8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6월 21일

남원시 규칙 제 745 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2조(「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의 개정) 남원시 청원경찰 복 무 및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5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를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로 한다.

제3조(「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의 개정) 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을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

다.

제9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의 어느하나에 의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의 개정) 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월례회의 부의사항은”을 “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9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7. ~ 8. (생략)	제2조(담보내용)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12세</u> ----- ----- 7. ~ 8.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비상근무) ----- ----- <u>제5조에도 불구하고</u> ----- ----- 제8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u>제13조부터 제19조까지</u> 의 ----- -----

제3조(「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신청서 등) ①조례 제7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신청서 등) ①----- ----- 제2항에 따라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승낙서 교부) ----- ----- 제2항에 따라 ----- ----- ----- ----- -----.</p>

제4조(「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사촌모임(이하 “회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내용)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한다.</p> <p>1. ~ 6. (생략)</p> <p>7.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p> <p>제6조(건의 요망사항 처리) ① (생략)</p> <p>② 회의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조(목적) ----- 제11조</p> <p>제6항에 따른 -----</p> <p>-----.</p> <p>제3조(회의내용)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의</u> -----</p> <p>제6조(건의 요망사항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p> <p>-----.</p> <p>③ (현행과 같음)</p>

제5조(「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2조의</p>	<p>제5조(사용허가) ①---- 제12조에</p>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관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 -----

-----.

②제1항에 따라 -----

-----.

제6조(사용허가 취소) --- 제13조에 따라 -----

-----.

제7조(사용료 고시) ---- 제14조에 따른 -----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

-----.

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생략)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라 -----

----- 그 밖의 -----

③제1항에 따라 -----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

<p>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 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 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 제9조에 따른 ----- ----- ----- ----- -----.</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 ----- ----- ----- ----- ----- ----- -----.</p>
---	---

제7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 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p>	<p>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남원시 공무원직장협 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 항에 따른 ----- ----- ----- 제3조제4항에 따라</p>

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

-----.

② ----- 제1항에 따라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

-----.

②제1항에 따라 -----

----- 제4조제4
항에 따라 -----

--.

③----- 제4조

제8조(「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p> <p>6. ~ 8. (생략)</p> <p>④ (생략)</p>	<p>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제2조제3호에 따른 ----- --</p> <p>6. ~ 8.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제9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p> <p>제3조(점용료의 감면) ----- ----- 제8호에 따른 ----- ----- -----.</p>

<p>제4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의한 다.</p> <p>1. ~ 2.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4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p> <p>-----</p> <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 제5조제1항에 따른 -----</p> <p>-----</p> <p>----- 제157조에 따른 -----</p> <p>-----.</p>
---	--

제10조(「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 같은 법 시행령-----</p> <p>----- 제8조에 따라 -----</p> <p>-----</p> <p>-----</p> <p>-----</p> <p>-----</p> <p>-----.</p>
<p>제2조(적용) 지소의 관리·운영을</p>	<p>제2조(적용) -----</p>

<p>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 ----- ----- <u>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7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p> <p>1. ~ 25. (생략)</p> <p>26. 기타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p>	<p>1. ~ 25. (현행과 같음)</p> <p>26. <u>그 밖의</u> -----</p>
<p>제8조(월례회의) ① (생략)</p> <p>② <u>월례회의의 부의사항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8조(월례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제11조(「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조례 <u>제17조제1항의</u> 규정에서 <u>의하여</u>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 <u>제17조제1항에 따라</u>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남원시내에서 식품</p>	<p>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p>

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
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생략)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
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
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
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

----- 그러하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현행
과 같음)

② -----

제17조제2항에 따른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
9조에 따라 -----

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
식의 용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하며, 동일품목
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
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다.

-----.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6월 21일

남원시 규칙 제 746 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남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채용 및 다른 법률, 조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청소년국악단, 청소년농악단, 청소년합창단을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이하 “청소년 예술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직무대행) ① 조례 제7조 예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채용

제4조(단원의 직책·정원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각 예술단의 직책 및 정원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단원의 채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채용 시 예술단별로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하되, 예술단별로 모집 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및 일반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상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⑤ 청소년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제6조(예술감독 임기 등)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의 임기는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별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전형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서류,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준, 전형방법 등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의 전형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계획으로 시행한다.

⑤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보수 등

제8조(단원의 보수 등) ① 각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계약직 단원의 기본연봉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계약기간으로 계약 종료 시 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기본연봉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 및 계약직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④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이 근무 또는 연습 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되,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⑤ 신규채용,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1. 국악단 :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2. 농악단 :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합창단 :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청소년합창단 : 별표 7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연출연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별표 8에 따라 공연 출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악단원에게는 상설 공연에 따른 분장비로 별표 9에 따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인턴단원 보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년인턴단원의 기본연봉 및 수당은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급 지급)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11의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된 단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명예퇴직 수당)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예술단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여비)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등

제15조(복무)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평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근무평가는 각 예술단 별로 실시하되,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징계)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징계처분, 징계 종류, 징계효력, 징계관리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입장료 징수

제18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 예술단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공연작품에 따라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공연 별로 따로 책정하며, 제1항에 따른 위탁 판매의 경우 관람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
- ④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은 별표 13와 같다.
- ⑤ 제4항에 따른 초청공연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국악단 및 국악연수원 운영

제19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의 공연작품 출연과 개인 예술성 기량향상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공연기획·지원 및 홍보·마케팅 업무
3. 국악전용 공연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4.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
5. 그 밖에 예술단장·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제20조(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공연물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도위원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분야별로 공연연습, 음악구성, 지휘, 안

무 등 공연작품 지도관리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

④ 연수부장은 연수강사 관리 및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한다.

⑤ 단원은 작품공연연습, 출연, 개인기량연습, 기획, 홍보, 시민강좌 등의 임무를 한다.

제21조(직책단원 임명) 근무연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우수단원 중에서 악장,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예술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직 단원) 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연수부장, 연수강사를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3조(국악연수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은 주당 5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② 국악 교육은 단기·특별반으로 운영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③ 연수생의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책정한다.

1. 교육 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 의식 고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유사 업종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장 농악단 운영

제24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남원농악의 보존·육성 및 공연작품 활동 등을 한다.

②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악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농악전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 의상·소품·악기 등 공연물 관리
4. 단원의 근무관리, 농악단 홍보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
5. 그 밖에 예술단장·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제25조(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등 농악단 지원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③ 사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연습,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행정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④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

⑤ 상임단원 중에서 청소년 지도단원을 지정 운영하며, 단원 모집, 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제26조(계약직 단원) 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단무장을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장 합창단 운영

제27조(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비상임전문단원은 공연기획, 공연연습, 연습실 시설관리, 합창단 모집·지도,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과 공연작품 출연 임무를 겸한다.

③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

제9장 청소년예술단 운영

제28조(기능)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인성·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 ② 청소년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수시공연 또는 시립예술단 전체 단원과 합동공연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연을 개최하되, 이 경우 청소년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지도단원) ① 청소년국악단의 지도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한 사람
4.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청소년농악단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상임단원이 담당한다.

③ 청소년합창단은 별표1에 따른 예술감독 및 지도단원이 단원모집·지도, 물품관리, 연습실 시설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청소년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

제30조(외부 지도교사) 청소년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4에

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제32조(연습활동 장려금 지원 등) ① 단원의 예술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습활동 장려금을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소년예술단의 활동장려금은 예술단별로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한다.

③ 단원의 연습 및 공연작품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수송 대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장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제33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술단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인원 : 작품별 3명 이상 15명 이내
2. 선정방법 및 활동기간 : 공개모집 및 1년 이내(작품별 기간 선정)
3. 지원 자격 : 18세 이상의 문화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③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예술단별 전공자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시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2~10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예술단의 공연작품 평가대상 및 평가인원을 정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연평가 모니터링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다.

제11장 보칙

제3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립합창단 및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예술단원의 직책 및 정원 (제4조 관련)

- 예술단장 : 부시장 ○ 부단장 : 담당 업무과장
 ○ 시립예술단 총 단원수 : 234명

직 책 명			정 원	비고	
국 악 단			51명		
예능단원 (42)	예 술 감 독		1		
	지 도 위 원	악 장	1	▶창악부	
		지 휘 자	1	▶기악부	
		안 무 자	1	▶무용부	
	수 (6 급 상 당 석)		6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단원의 정원을 통합관리	
	차 (7 급 상 당 석)		6		
	정 (8 급 단 상 당 원)		20		
	정 (9 급 단 상 당 원)		6		
사무국 (6)	사 무 국 장		1		
	기 획 · 연 출		1		
	홍 보 · 연 구		1		
	스 탭 단 원		3	▶무대감독, 조명·음향, 기계분야 등	
국악 연수원 (3)	연 수 부 장		1		
	연 수 강 사		2		
농 악 단			52명		
예능단원 (50)	예 술 감 독		1		
	진 문 단 원	상 임	11	▶상임단원 중에서 청소년지도단원을 지정 운영 한다.	
		비 상 임	4		
	일 반 단 원		34		
사무국 (2)	단 무 장		1	▶사무국 단원은 공연작품 출연의 임무를 겸한다.	
	사 무 장		1		
합 창 단			45명		
예능단원 (45)	예 술 감 독		1	▶지휘자	
	비 상 임 전 문 단 원		7	▶지도단원(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 등) ▶지도단원은 공연작품 출연의 임무를 겸 한다	
	일 반 단 원		37		
청 소 년 예 술 단			86명		
예능단원 (86)	국 악 단		16	▶지도단원, 일반단원	
	농 악 단		20	▶일반단원	
	합 창 단	예 술 감 독		1	▶지휘자
		상 임 지 도		3	▶지도단원(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 등)
		비 상 임 지 도		2	
		일 반 단 원		44	

[별표 2]

예술단원의 자격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직책명		자격기준	
국악단	예술감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2.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사람 3. 국·공립예술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 한 사람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사무국	국장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국·공립 및 등록된 예술단체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획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2. 홍보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3. 스텝단원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공립단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국가 공인자격 소지자
	예능단	악장 지휘자 안무자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공립 및 등록된 예술단체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2. 전국 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4. 시립국악단원 중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자
		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 장관상 이상 소지자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자 4. 시립국악단 청년인턴단원 6개월이상 활동 경력자
	연수원	부장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시립국악단원 중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자
		강사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 장관상 이상 소지자 3. 국·공립예술단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등록된 예술단체 동일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4. 시립국악단원 중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직 책 명		자 격 기 준
농악단	예술감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2.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사람 3. 국·공립예술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이상 역임 한 사람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상임전문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전국규모 농악경연대회 장관상 이상 소지자 3. 국·공립예술단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등록된 예술단체 동일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비상임전문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전국규모 동종분야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3. 시립예술단 일반단원으로 5년이상 재직 및 경력 소유자
	일반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사람
합창단	예술감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 규모 예술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립예술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5년이상 역임 한 사람 3. 대학교·기관·예술단체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4. 시립예술단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지도 경력자
	비상임전문단원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 규모 예술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대학 졸업(2년제)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1년 이상 역임 한 사람 4. 대학교·기관·예술단체에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일반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규모 성악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음악적 기본 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청소년예술단	예술감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 규모 예술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립예술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5년이상 역임 한 사람 3. 대학교·기관·예술단체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4. 시립예술단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지도 경력자
	상임지도단원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 규모 예술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대학 졸업(4년제)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 한 사람 4. 대학교·기관·예술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5.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의 지도경력자
	비상임지도단원	채용일 기준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국 규모 예술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대학 졸업(2년제)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1년 이상 역임 한 사람 4. 대학교·기관·예술단체에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일반단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18세 이하 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남원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시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부모의 관내 학교의 학생(전체 단원 수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3. 음악적 기본 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별표 3]

단원의 보수 지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예술단명	직책명	지급기준	
국악단	예술감독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또는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수석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차석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7급상당액	
	정단원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9급상당액	
	연수부장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또는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연수강사	월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액 또는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 7~9급상당	
농악단	예술감독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또는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단무장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또는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상임단원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비상임단원	실비보상금 / 월800,000원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 월250,000원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연봉제 18,000,000원~24,000,000원	
	비상임단원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 월250,000원	
청 소 년 예 술 단	국악단	비상임 지도단원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농악단	상임단원	*성인농악단 상임단원이 지도업무를 겸직함.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상임 지도단원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 7~9급 상당)
		비상임 지도단원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별표 4]

국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1호 관련)

(단위, 원)

직 책 명	직책수당 (월)	연구수당 (월)	예능수당 (월)	관리수당 (월)	원거리수당 (월)
예술감독	400,000	250,000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200,000	100,000	120,000	소품, 의상, 악보, 악기, 자동차관리 50,000 *담당자지정	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수 석	160,000		100,000		
차 석	140,000				
정 단 원	120,000				
연수부장	150,000	100,000	80,000		
연수강사	130,000	70,000	60,000		

※ 예술감독 겸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단원에게는 예술감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5]

농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직 책 명	직책수당 (월)	연구수당 (월)	예능수당 (월)	관리수당 (월)	비고
예술감독	200,000	150,000			
사무국	단무장	170,000	50,000	100,000	소품, 의상, 악기 50,000 *담당자 지정
	사무장	150,000		80,000	
상임단원	-		80,000		

[별표 6]

합창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3호 관련)

(단위, 원)

직 책 명	직책수당 (월)	연구수당 (월)	관리수당 (월)	비고
예술감독 겸 지휘자	120,000	50,000		
비상임전문단원			소품, 의상 등 50,000 *담당자 지정	

[별표 7]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수당 (제9조제4호 관련)

(단위, 원)

직책명	직책수당 (월)	연구수당 (월)	관리수당 (월)	비고
예술감독 겸 지휘자	120,000	100,000		
상임지도단원	70,000	50,000	소품, 의상 등 50,000	
비상임지도단원			*담당자 지정	

[별표 8]

공연출연수당 지급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지급기준(회당)				비고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휴일	해외	
협연·기획공연 (국악단)	주연수당 (7인 이내)		100,000	100,000		청소년단원 제외
	상임단원	20,000	60,000	60,000	80,000	
일반공연	비상임단원, 일반단원		50,000	50,000		

- ※ 공연작품 제작·출연시 주연 선발명단은 제작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협연·기획공연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소 30명 이상의 공연작품으로 제한 한다.)
- ※ 상임단원은 휴일공연 후 대체휴무시 공연출연수당은 60%를 지급한다.
- ※ 동일장소(1일기준) 공연은 공연횟수와 상관없이 1회분의 공연출연수당을 지급한다.
- ※ 공연출연수당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9]

국악단원의 분장비 지급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지급기준(월)	비고
전체단원	10,000	연120,000

[별표 10]

청년인턴단원 기본연봉 및 수당 지급기준 (제11조 관련)

(단위, 원)

기본연봉	공연출연수당(회당)	급식비(월)	비고
연봉25,000,000~30,000,000이내	60,000	140,000	

[별표 11]

성과급 지급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지급 기준액

구분	기준액 산출	지급대상
기준액	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0퍼센트 적용 *예시 24년 5,616,000원의 40퍼센트 = 2,246,400원	상임단원

■ 지급 기준율

지급등급 (인원비율)	가 등급 (15퍼센트)	나 등급 (35퍼센트)	다 등급 (30퍼센트)	라 등급 (20퍼센트)
지급율 (기준액 대비)	12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 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

※ 성과평가는 평가집단을 재직기간별로 1~15년차, 16~25년차, 26~40년차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집단별로 지급등급을 구분한다.

[별표 12]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기 준	범 위	비 고
일반공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든 입장객	

[별표 13]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시립국악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내	관외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	25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	1,5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	2,500,000원 이상	3,500,000원 이상	
31명 이상	3,500,000원 이상	4,500,000원 이상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박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내	관외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	25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	400,000원 이상	8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	800,000원 이상	1,2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31명 이상	1,5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박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청소년예술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내	관외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	200,000원 이상	4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	400,000원 이상	6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	600,000원 이상	8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	8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31명 이상	1,000,000원 이상	1,500,000원 이상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박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별표 14]

청소년예술단 외부지도교사 수당 지급기준 (제30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지급기준	
		최초(2시간)	초과(매시간)
지도수당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	200,000원	50,000원
	남원시립예술단원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	50,000원	20,000원

[별표 15]

청소년예술단 단원의 연습활동 장려금 지급기준 (제32조제1항 관련)

구분	장려금	비고
초등학생	500,000원	· 지급기준: 위촉 후 1년이상 활동한 단원 · 지급시기 : 연1회
중고등학생	1,0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

(앞 쪽)

응시원서(상임) (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농악단,합창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사진부착
응시분야	(예시) 국악단, 예술감독	3.5cm× 4.5cm
성명	한글	(반명함판)
	한자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생년월일		
주소	(우)	남원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10,000원/5,000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예시) 국악단, 예술감독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남원시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뒤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응시분야 : 응시하려는 모집분야와 직책을 기재합니다.
 - 가. 단 장 단 :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 나. 상임단원 :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기타 계약직 단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납원시 수입증지 : 납원시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입니다.

예술감독 지원자는 1만원, 상임단원 지원자는 5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상임 및 일반단원

남원시립예술단 응시원서 (제5조제4항제1호 관련)

※ 응시 번호		응 시 분 야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 합창단)		사진부착 3.5cm× 4.5cm (반명합판)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 명	한글	응 시 등 급		비상임, 일반단원			
	한자	생 년 월 일		직 업			
주 소	자택	전 화					
	E-Mail	휴대전화					
학 력	고등학교	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			
	대 학 교	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대 학 원	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주 요 해 당 분 야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						
	~						
	~						
주 요 수 상 경 력	수상일자	수상내용		관련대회(행사)			
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 · 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							

주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응 시 표	성 명	
	생 년 월 일	
※ 응시번호		
응시분야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 합창단)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6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학교명 :

성 명 :

귀하를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국악·농악·합창)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소 속	자 필 작 성	신 분 구 분	[] 예술단원 [] 사무단원	작(계)금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진 화 번 호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년 월 일
비위·형벌사항		[] 있음 [] 없음			
정년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수당청구액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산출내역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임 : 명예퇴직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또는날인</p>					
확 인	○○○과 직급: 성명 (인)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남원시장 귀하</p>					

[붙임]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자 필 작 성
- 2. 직 위 : 자 필 작 성
- 3. 성 명 : 자 필 작 성

상기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자필 작성(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국악연수원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23조제5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연 수 반		과 정	초 급 중 급 고 급
교 육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월 일)		
반환대상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월 일)		
반환대상 수강료	원()		
반환사유			
계좌번호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지원서 (제33조제3항 관련)

성명	한글:	생년 월일	년 월 일 (세)	성별	남 · 여
	한문:				
주소:				(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연락처	유선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학력					
학교		전공 재학 · 졸업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					
<input type="checkbox"/>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으며,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청소년예술단) 공연평가모니터링단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의견서 (제34조제3항 관련)

평가대상공연

예술단명	공연명	공연시간	공연장소

평가 요소·지표별 평가

평가요소	연번	평가지표	평가등급					소계 점수
			⑤	④	③	②	①	
정체성	1	시립예술단 성격에 맞는 공연이다	5	4	3	2	1	
	2	예술단의 정체성이 잘 전달되었다						
	3	전통의 보존·전승과 창조적 계승에 충실하다						
	4	대상 공연이 시립예술단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기획 및 구성	5	작품에 기획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6	타 공연과 차별성이 있다						
	7	작품의 구성요소(음악, 연출, 안무 등)가 적절하다						
작품성 및 기량	8	재공연, 장기공연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9	작품의 통일성, 창의성이 조화롭다						
	10	관객의 호응도가 높고 감동을 이끌어낸다						
	11	출연자의 캐스팅이 적절하며 기량이 우수하다						
무대	12	연습량이 충분해 보이며 출연자간의 조화가 돋보인다						
	13	공연 내용과 무대가 조화를 이룬다						
	14	무대 구성과 연출이 만족스럽다						
	15	무대 진행이 매끄럽다						
	16	조명, 의상, 무대 세트 등이 조화롭다						
관객 서비스	17	공연 장소 내 음향의 균형이 적절하다						
	18	관람료가 적절하다						
	19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팸플릿, 자막, 해설 등)가 적절하다						
		20	서비스(예매, 구입, 관람, 시설, 휴식 등)가 만족스럽다					
총 점							100	

※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5점 만점으로 등급 간 차이는 1점

종합평가

최종 점수	평가의견
평가자	성명: (서명)

「남원시립예술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6월 21일

남원시 훈령 제 462 호

남원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원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남원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남원시립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예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성실의 의무 :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지시이행 의무 :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사적출연 등

제3조(사적출연) ① 상임단원은 근무시간 내에 예술단이 주관하는 공연을 제외한 사적출연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예술단체(기관)와의 협연 또는 초청공연
2. 방송 또는 공익목적의 사회단체 주관행사 출연 등 예술단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공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단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차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 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근무시간 외 단원의 사적출연은 월 3회 이내로 하며, 동일 행사에는 5명 이하로 동시 출연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적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적출연 3일 전까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술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외부출장) ① 상임 단원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외 단원의 외부출장은 예술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 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관내 학교 및 읍면동 농악단 강습의 출강의 횟수는 공연작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강 5일전까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술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례금) 예술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사례금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체육행사 등) 단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대회 등 행사를 근무일에 유급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단원교육) ①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및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 발급) 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단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등

제9조(근무조건) 상임단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아닌 단원에 대한 근무조건은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하며, 각 예술단의 여건에 맞게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1. 국악단 : 근무일은 화~토요일이며,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능단원의 근무시간은 전체연습 또는 개인연습 등을 위해 별도의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2. 국악연수원 : 근무일은 월~금요일이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 시로 한

다.

3. 농악단 : 근무일은 화~토요일이며, 상임단원은 주 40시간 이내,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의 연습시간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4. 합창단 : 근무일은 월~금요일이며, 예술감독은 주 15시간 이내, 비상임지도단원 및 일반단원의 연습시간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5. 청소년예술단 : 근무일은 월~금요일이며, 청소년국악단 및 청소년농악단 일반단원의 연습시간은 주 4시간 이상, 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도단원은 주 35시간 이내, 비상임지도단원 및 일반단원의 연습시간은 주 4시간 이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②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청소년예술단 포함)의 연습시간은 각 예술단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 주 1~2일 이상, 1일 2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그 밖에 공연·연습 일정에 따른다.

③ 예술단장은 각 예술단의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해당 예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예술단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휴일 등 근무) ① 예술단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예술단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예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출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장 복귀 후 지체없이 예술단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국규모의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 및 연수생 인솔한 경우
2. 전국규모의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예술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3. 예술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국내외 각종 공연에 참가할 경우
4.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복무관리) ① 예술단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출근부를 비치하여 단원의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조퇴나 외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근은 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조퇴했을 경우에는 무단이석으로 간주한다.

③ 무단결근과 무단이석, 지각 등은 그 횟수에 따라 근무평정에 감점 반영한다.

제4장 휴가 및 휴직

제14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남원시 공무원 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남원시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 되어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평정

제17조(평정) ① 평정은 각 예술단별로 실시하며, 예술단원은 실기평정, 근무평정을 종합하여 평정하고, 평정결과는 성과급, 단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직책조정 등에 반영한다.

② 단원의 근무성적 및 기량 향상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1. 근무평정 : (사무단원)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예능단원)작품소화력, 조직기여도, 공연·연습태도 등

2. 실기평정 : (예능단원)예술적 기량평가

③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된 단원은 정기평정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정시기) ① 각 예술단별로 단원의 근무평정은 매년(12월말 기준), 실기(기량)평정은 격년제(홀·짝수년도)로 실시한다. 다만,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기(기량) 평정시기를 조정(수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등 계약에 따라 채용된 단원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평정을 실시하여 연장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은 각 예술감독 지휘하에 매년 또

는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정방법 및 대상) ① 단원에 대한 평정은 상임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단원 : 근무평정 100퍼센트
2. 예능단원 : 실기평정 70퍼센트, 근무평정 30퍼센트. 단, 예능단원 중 실기평정 제외자는 근무평정 100퍼센트로 평가한다.

② 각 예술단의 근무평정 심사는 절대평가로 하며, 평정심사위원의 평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 예술감독 40퍼센트, 사무국장 30퍼센트, 해당 지도위원 20퍼센트, 확인자(과장) 10퍼센트
2. 농악단 : 예술감독 50퍼센트, 단무장 40퍼센트, 확인자(과장) 10퍼센트. 단, 평정자가 해당 평정대상자인 경우에는 평정자에서 제외되며, 그 평정비율만큼 예술감독이 합산 평정한다.

③ 각 예술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기평정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9명 이하로 선발·위촉하며, 실기평정이 불필요한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의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및 사무국 소속의 단원
2. 농악단의 예술감독 및 단무장
3.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단원

④ 단원의 실기 평정 미시행 연도에는 전년도 실기 평정 점수로 환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연수 20년 이상 실기 평정 제외 단원도 예술성 기

량향상을 위해 별도로 평정계획을 수립하여 1회(25~35년차)에 한하여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의 결과를 합하고 가감점하여 종합평정으로 하며, 예능단원 중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함께 받을 경우 근무평정은 30퍼센트, 실기평정은 70퍼센트를 반영하여 종합 평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단원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단원은 각종 인사관리(승진, 성과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을 득한 저평가 단원은 경고 조치 및 작품출연 제한하고 별도 관리하며, 저평가 연속 2회인 사람은 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③ 비상임 및 일반단원의 실기평정 100점 기준으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단원은 경고 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며, 재평정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해제 한다. 불가피하게 실기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도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에 불참하거나 7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해제 한다.

④ 예술단장은 각 예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실기평가 저평가 단원에 대하여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평정 제외자 및 불참자 처리) ① 단원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단, 평정에서 제외된 단원은 직전 평가를 반영한다.

1. 각종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단원 및 해당 연도 기준 정년을 앞둔 사람
3. 실기 평정기간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단,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의로 평정을 회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단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평정결과 공개 및 관리) ① 평정결과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 단원이 요청할 경우 종합점수와 근무상황 감점 사유를 알려줄 수 있다.

② 단원의 근무평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와 같고, 이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관리 등

제23조(장부의 비치) 예술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단원을 인사관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단원 위촉 및 해촉대장
3. 악기, 소품 등 비품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24조(호봉획정 등)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을 획정한다.

1. 신규임용 단원은 별표 3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2.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 연한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확정한다.

③ 휴직 중인 자와 징계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복직일 및 승급 제한기간 종료 후 호봉을 재확정하며, 직책이 조정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승진·강임 시의 호봉 확정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재확정 한다.

제25조(국악단원 승진) ① 단원의 직위(급)은 수석(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차석(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정단원(일반직공무원 8~9급상당)으로 구분한다.

②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단원을 대상으로 평정심사를 통해 해당 단원을 상위직책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소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위(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차석단원(7급 상당) 중에서 수석단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수석단원(6급 상당)의 정원수는 총정원의 20퍼센트 범위로 운영한다.

2. 해당 직위(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정단원(8급 상당) 중에서 차석단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차석단원(7급 상당)의 정원수는 총정원의 30퍼센트 범위로 운영한다.

3. 해당 직위(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정단원(9급 상당) 중에서 상위 정단원(8급 상당)으로 승진할 수 있다.

③ 상위직위로 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승진한 인원만큼 승진한 직위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위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한다.

제26조(정년) ① 상임단원의 정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②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따라 채용된 단원은 계약조건의 기간으로, 비상임

단원은 60세로, 일반단원은 70세로 한다.

제7장 상벌

제27조(상훈) ① 시장은 예술단원 중 시정발전 및 시민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 등의 상훈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종류) ① 단원의 징계는 별표 4의 징계기준을 따르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2. 경징계 : 견책 · 감봉

② 징계양정 기준 및 가중·감경 등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음주운전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 그 밖의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징계사유) ① 각 예술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복무(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결근)를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② 단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지각·무단외출·무단조퇴·무단결근은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로 한다.

1.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2.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3. 관계 법규 발췌문

제30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단 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노조단체 지명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징계당사자 및 징계대상자 소속 예술감독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성희롱 등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술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임·파면된 단원은 징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재임용할 수 없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그 처분 기간 중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⑥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연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전에 검직(외부)허가를 받은 이외의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6월
2. 감봉: 12월 + 처분기간
3. 강등, 정직: 18월 + 처분기간

⑧ 징계처분 결과는 해당 연도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관리) ①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건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준용) 단원의 복무 등 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남원시 공무원복무조례」 「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원시립국악단원 복무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사례금 지급기준 (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사례명	구분	단위	지급액	비고
대본료	장막극, 단막극, 국악종합극	작품	(별표1-1)	*상한액 지급시 해당 분야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원이 참여시에는 해당 사례금의 하한액인 70퍼센트를 지급한다.
	각색	작품	1,000~3,000	
	구성	작품	1,000	
작곡료	공통	작품 1곡	(별표1-2) 500~3,000	
작창료	공통	1곡	300~1,000	
편곡료	공통	작품 1곡	(별표1-3) 300~1,000	
연출료	공통	작품	(별표1-4)	
조연출료	공통	작품	(별표1-5)	
안무료	공통	작품	(별표1-6)	
구성각색료	공통	작품	(별표1-7)	
원작사용료	공통	작품	500~5,000	
지휘료	공통	1회당	1,000~4,000	
해설·사회료		1회당	100~1,000	
오선 악보	사보	총보	50매이내 50매초과	면당 10 면당 5
	채보		행당	행당 2
협연 및 객원료	공통	1회당	(별표1-8)	*상한액 지급시 해당 분야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심사·교육 등	교육·강의(단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심사평가 전형·위원 등	반일/전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 적용	교통비 별도
			300이내 / 500이내	교통비 별도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1일간	80~200	근무: 8시간기준
	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	1회당	250	
기 타	장치·무대 디자인		1,000~5,000	
	의상 디자인		1,000~4,000	
	소품 디자인		500~2,000	
	음향·영상 디자인		1,000~3,000	
	조명디자인		1,000~4,000	

[별표 1-1]

대 본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단막극〉 A급	작품	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	5,000 이하	1편 (30분 내외)
	B급	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 는 10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	4,000 이하	
	C급	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	3,000 이하	
〈장막극〉 A급	작품	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	7,000 이하	1편 (70분 내외)
	B급	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	5,000 이하	
	C급	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	4,000 이하	
〈국악종합극〉 A급	작품	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	10,000 이하	1편
	B급	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	8,000 이하	
	C급	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	7,000 이하	

※) 작품A,B,C등급은 극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경력기준 또는 학력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별표 1-2]

작 곡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0작품 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15,000 이하	70분 이상
B급	작품	5작품 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12,000 이하	
C급	작품	3작품 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10,000 이하	

[별표 1-3]

편 곡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0작품 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7,000 이하	40분 이상
B급	작품	5작품 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5,000 이하	
C급	작품	3작품 이상 창극가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3,000 이하	
D급	작품	3작품 미만 창극가 또는 5년 미만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시간강사	2,000 이하	

[별표 1-4]

연 출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5작품 이상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15,000 이하	〈국립종합 (음악)극〉 60분 이상
B급	작품	10작품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12,000 이하	
C급	작품	5작품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10,000 이하	

※ 동일 작품의 재공연시(연속재공연 제외) 연출료, 조연출료 등은 당초 지급액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5]

조 연 출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0작품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5,000 이하	〈국립종합 (음악)극〉 1회 공연 기준
B급	작품	5작품 이상 또는 7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4,000 이하	
C급	작품	3작품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3,000 이하	

※ 동일 작품의 재공연시(연속재공연 제외) 연출료, 조연출료 등은 당초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6]

안 무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0작품 이상 안무가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7,000 이하	1편
B급	작품	5작품 이상 안무가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5,000 이하	
C급	작품	3작품 이상 안무가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4,000 이하	
D급	작품	3작품 미만 안무가 또는 5년 미만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시간강사	3,500 이하	

[별표 1-7]

구 성 각 색 료

(단위 : 천원)

구분 사례명	단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A급	작품	10작품 이상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3,000 이하	〈국립종합 (음악)극〉 1회공연기준
B급	작품	5작품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2,500 이하	
C급	작품	3작품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2,000 이하	

[별표 1-8]

협연 및 객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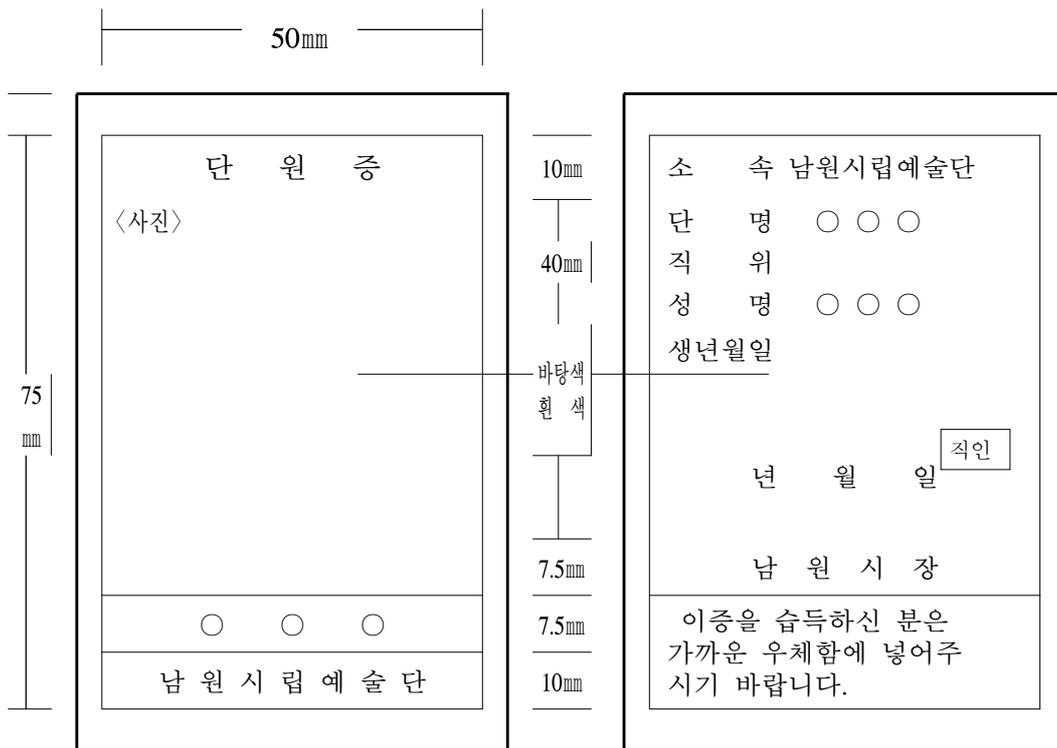
구분 등분	경력기준	학력기준	금액	비고
특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및 단장	400~600만원 이하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및 국립단원이상	200~400만원 이하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100~200만원 이하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50~100만원 이하	
D급	해당분야 10년 미만 경력자		20~50만원 이하	
E급	기타(대학생 이하)		10만원 이하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시립예술단원의 단원증 (제8조 관련)

(전 면)



[별표 3]

신규임용 시 경력환산기준표(제24조제1항관련)

경력구분	경 력 내 용	환산비율
단원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0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50%
	기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활동경력	50%
유사 경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초·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10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초·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경력 ※ 비상근강사(시간강사 등) 가. 「고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frac{\text{주당 근무시간}}{\text{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50%
기타 경력	군복무 경력	100%

※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유사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합산한다.

[별표 4]

징 계 기 준 (제28조제1항 관련)

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예술단운영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 하였을 때	해임-파면	강등-정직	감봉-출연정지	견책
2.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임-파면	강등-정직	감봉-출연정지	견책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해임-파면	강등-정직	감봉-출연정지	견책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해임-정직	감봉	출연정지	견책

복무(근무실태)

위반횟수 유 형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지 각	-	-	주의	경고	견책
무단외출	-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무단조퇴	-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무단결근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복수유형 위반시 (지각, 무단외출·조퇴·결근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

「외부출강」 허가원(제4조제3항 관련)

소 속 : 남원시립 ○○○

성 명 :

위 사람은 「남원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출강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체				
강의기간 (결직기간)		강의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강의횟수 : • 월 강의시간 : 	
강의 요청기관		결직(강의) 시 직위		
결직(강의)시 받는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강의 시 : 원 • 월 보수 : 원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담당자	직책단원	예술감독	결재

남원시립예술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업 무 일 지 (제10조제3항 관련)

_____ 단

_____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직책단원	예술감독	결 재

연 습 내 용	오 전		특이사항
	오 후		특이사항
공 연 및 행 사	공 연		특이사항
	교 육		
	기 타		

예술단별 출근부 (제13조제1항 관련)

(소속 :) 20 . . . ()

연번	파 트	직 책	성 명	출근시간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별지 제6호서식]

(사무국 단원)시립예술단 근무평정서(제22조제2항 관련)

□ 평정대상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월 일

1. 피 평정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단)	직책(급)	직무	최초위촉일

2.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담당업무]

[추진실적]

3. 직무수행능력 평가(7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정점
1	자기계발	10	* 업무능력 향상 및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고객지향	10	* 업무과 관련하여 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업무지식	10	*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이해·숙련·활용한다.	
4	정보수집 관 리	10	*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한다.	
5	창 의 성	10	* 담당업무 수행시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실 행 력	10	* 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7	윤리의식	10	* 기본적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적 의식을 발휘한다.	
총 점				

※ 우수 10~9, 보통 8~7, 미흡 7~6, 불량 5이하

4. 근무실적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평정점
1	적극성	6	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협조성	6	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	성실성	6	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	소속감	6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	기여도	6	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				

5. 근무평정 가점 (업무담당자 작성)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	2		
2	수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6. 근무평정 감점 (업무담당자 작성)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7. 종합평가

종합평정점 (3+4+5-6)	평가자 의견
작성일	년 월 일
평가자	직위(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실기평정제외 예능단원) 시립예술단 근무평정서(제22조제2항 관련)

□ 평정대상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월 일

1. 피 평정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책(급)	직무	최초위촉일	근무연수

2. 추진실적

※ 1년간 공연작품 실적, 개인연수 등 추진실적을 기재함

3. 근무평가(100점)

구분	작품소화력 (20점)				조직기여도 (20점)				공연·연습참여도 (20점)				공연·연습태도 (20점)				성실도 (20점)				합계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정자																					

※ 우수 20~18점, 보통 17~15점, 미흡 14~10점, 불량 9~1점

※ 공연연습참여도는 월별 공연연습 참여횟수 평가에 따라 평정하며, 성실도는 평소 근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정

4. 근무평정 가점 (업무담당자 작성)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팸플릿 제출 필요)	2		
2	수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5. 근무평정 감점 (업무담당자 작성)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6. 종합평가

종합평정점 (3+4-5)	평가자 의견		
작성일			
평가자	직위(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예능단원)시립예술단 근무평정서 (제22조제2항 관련)

□ 평정대상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월 일

1. 피 평정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책(급)	직무	최초위촉일

2. 추진실적

※ 1년간 공연작품 실적, 개인연수 등 추진실적을 기재함

3. 근무평가(30점)

구분	작품소화력(6점)				조직기여도(6점)				공연·연습참여도(6점)				공연·연습태도(6점)				성실도(6점)				합계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	5	4	3	6	5	4	3	6	5	4	3	6	5	4	3	6	5	4	3	
평정자																					

※ 공연·연습참여도는 월별 공연·연습 참여횟수 평가에 따라 평정하며, 성실도는 평소 근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정

4. 근무평정 가점 (업무담당자 작성)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팸플렛 제출 필요)	2		
2	수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5. 근무평정 감점 (업무담당자 작성)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6. 종합평가

종합평정점 (3+4-5)	평가자 의견
작성일	년 월 일
평가자	직위(급) : 성명 : (서명)

남원시 공고 제2024-120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 문화저장소)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 문화저장소) 결정(변경) “안”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1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5	문화 시설	문화 저장소	남원시 금동 45번지 일원	3,604	감)3,604	-	남원시 고시 제2021-182호 (2021.12.10.)	

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문화시설 (문화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폐지 -면적 : 3,604㎡→0㎡ 감)3,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한옥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한옥 전통호텔로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공람 기간 :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간

3.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